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763
----------	-----

제안년월일: 2019년 6월 20일

제안자: 기획경제위원장

1. 주 문

- 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운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라 업무규정의 개정사항 모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나. 이와 같이 지나친 규제는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업무규정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함.
- 다. 현행 농안법령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그 기준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 도매시장 내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 등을 야기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함.

- 라.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 담합, 과도한 이익 배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소송 등의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수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 마.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평가와 재지정권은 해당 도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법 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이양함.
- 바. 중도매인의 외상판매 관행을 근절하여 출하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대금정산조직 설립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출하대금 지급의 안정성 확보와 도매시장법인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

2. 제안이유

-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출발선에 있는 생산자와 도착점에 있는 최종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각 제정되고 설립된 농안법령과 공영도매시장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채, 소비자가 지불하는 농수산물의 가격과 생산자인 농어민이 받는 가격의 괴리가

견잡을 수 없이 커졌음.

- 그 원인에는 판매의 통로인 도매시장의 낙후된 환경과 전근대적인 유통구조에 있지만, 농안법령이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수십 년간 미 개정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데 있음.
- 이에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에서 국내농가와 공영도매시장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생산자, 출하자, 소비자 및 유통인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현실여건과 거래 실태 등을 고려하여 농안법령 등을 개정할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함.

3. 이송처

-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농수산물의 유통은 생산자인 농어민과 최종소비자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주체와 경로가 상호 연계되어 농수산물의 수집·운송·보관·거래가 이뤄지는 복잡한 과정이다.
- 따라서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의 출발선인 생산자와 도착점에 있는 최종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여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되고 고려되어야 한다.
- 하지만,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영도매시장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채, 소비자가 지불하는 농수산물 가격과 생산자인 농어민이 받는 가격의 괴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 그 원인에는 도매시장의 낙후된 환경과 전근대적인 유통구조에 있지만, 농안법의 관련 규정이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수십 년간 미 개정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데 더 큰 이유가 있다.

- 실제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의 농수산물 거래물량이 2014년 7,518천톤에서 2017년 7,343천톤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은 최근 5년 (2013-2017) 평균 13.2%의 당기순이익률을 기록했다.
- 천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가락시장의 판매가격이 전국 시장의 기준 가격이 되고 있으나, 농수산물 가격 결정에 있어서 생산자나 출하자, 소비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는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에 대응해 공영도매시장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통주체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을 둘러싼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 농안법령을 정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첫째,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농안법령은 국정과제의 핵심 기조인 자치분권의 확대에 역행하고 있으므로, 업무규정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해야 한다.
 - 둘째,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확대·명확화하여 도매시장 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 셋째, 도매시장별 위탁수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정액수수료 설정 권한과 관련하여 혼란이 없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 넷째,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평가와 재지정권은 해당 도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법 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 다섯째, 중도매인의 외상판매 관행을 근절하여 출하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대금정산조직 설립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출하대금 지급의 안정성 확보와 도매시장법인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2019.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참고자료 1] 농안법령 개정 요청 사항

1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 장관 승인 범위 조정

개정 검토(안)

○ 농안법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현 행	개정 검토(안)
<p>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①~④(생략)</p> <p>⑤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p>	<p>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①~④(현행과 같음)</p> <p>⑤업무규정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p> <p>.....</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매시장의 명칭·장소·면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4.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비상장거래 허가 요건 확대 및 명확화

개정 검토(안)

○ 농안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현 행	개 정(안)
<p>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① (생략)</p> <p>②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p>	<p>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p> <p>②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p>

<p>으로 정하는 <u>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③ ~ ⑦ (생략)</p>	<p>령으로 정하는 <u>도매시장법인의 집하 능력이 부족하거나 도매시장에 반입되기 전에 1차로 가격이 결정되는 등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	--

○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현행	개정(안)
<p>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개설자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영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p> <p>-----</p> <p>-----</p> <p>-----</p> <p>-----</p> <p>-----</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관세법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가격이 1차로 결정되어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품목</u> <u>이법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지에서 경매 등으로 가격이 1차로 결정되어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품목</u> <u>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u>

<p>3.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u>현저히 곤란하다고</u>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p>	<p>통하여 생산된 품목</p> <p>6. ----- ----- <u>적합하지 아니하다고</u> ----- -----</p>
--	---

3 위탁수수료 관련 규정 명확화 및 오류 수정

개정 검토(안)

○ 농안법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현 행	개 정(안)
<p>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④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의 최고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u>업무규정으로</u>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곡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2.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3.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4. 축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5. 화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6. 약용작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p>⑤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u>도매시장법인이</u> 정하되, 그 금액은 제4항에 따른 최고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p>	<p>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④ …………… …………… …………… <u>업무규정으로</u> 거래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u>도매시장별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달리</u> 정할 수 있다.</p> <p>(현형과 같음) (현형과 같음) (현형과 같음) (현형과 같음) (현형과 같음) (현형과 같음)</p> <p>⑤ …………… …… <u>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u> 정하되, …………….</p>

4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평가 권한 지자체 이양

□ 개정 검토(안)

○ 법 제77조(평가의 실시)

현 행	개정 검토(안)
<p>제77조(평가의 실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관리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개설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②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p>제77조(평가의 실시) ① 도매시장 개설자의 거래제도·물류체계 개선 등 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부진한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 권고 <p>③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의...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 삭제 > < 삭제 > < 삭제 ></p>

현 행	개정 검토(안)
<p>2. <u>부진한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 권고</u></p> <p>3. <u>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 공판장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 명령</u></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 삭 제 ></p> <p>⑤ (현행과 같음)</p>

○ 법 시행규칙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현 행	개정 검토(안)
<p>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① 법 제77조 제 1항에 따른 <u>도매시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u></p> <p>1.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연도의 평가대상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시장도매인(이하 이항에서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에 통보</u></p> <p>2. <u>도매시장법인등은 재무제표 및 제1호에 따라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u></p> <p>3. <u>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u></p> <p>가. <u>도매시장개설자가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도매시장 운영·관리 보고서</u></p> <p>나. <u>도매시장법인등이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재무제표 및 실적보고서</u></p>	<p>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① <u>평가는</u></p> <p>1.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연도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 통보</u></p> <p>< 삭 제 ></p> <p>2. <u>도매시장개설자는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도매시장 운영·관리 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u></p> <p><삭 제></p> <p><삭 제></p>

현 행	개정 검토(안)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1호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4. (현행과 같음)

○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현 행	개정 검토(안)
<p>제52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①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 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1.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p> <p>2.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p> <p>② (생략)</p>	<p>제52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①</p> <p>1. 제3항..... </p> <p>2. 제3항..... </p> <p>② (현행과 같음)</p>

○ 법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현 행	개정 검토(안)
<p>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p> <p>② ~ ⑥ (생략)</p>	<p>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① 있다. 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법 제77조 제3항의 도매시장개설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재지정 할 수 있다.</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5

통합 정산회사 설립 지원

개정 검토(안)

○ 농안법 제41조의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현 행	개정 검토(안)
<p>제41조의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대금의 정산을 위한 조합, 회사 등(이하 “대금정산조직”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하대금 2.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간의 농수산물 거래에 따른 판매대금 	<p>제41조의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산자금 등 그에 대한 지원을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p>